제 262회

이사회 회의록

일시 : 2022. 4. 27. (월) 14:00

장소 : 충청대학교 본관 3층 회의실

결재	사무과장	사무국장	이사장
	김호종	조영태	설동식

學校法人 忠淸學園

제262회 이 사 회 회 의 록

학교법인 충청학원

일 시 2022년4월27일(월) 14:00-16:00 (회의소집통보일 : 2022년 4월 19일)
장 소 충청대학교 본관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 보고사항
2. 감사보고
3. 안건심의
4. 간서명자 호선

상정된 안건

제1호 안건. 특임전임교원(강의중점교원)의 계약제 일반전임교원 전환 승인안
제2호 안건. 충청대학교 2023학년도 정원조정 승인안
제3호 안건. 충청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2022~2024) 승인안
제4호 안건.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제5호 안건.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 승인안
제6호 안건.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안
제7호 안건. 「학교법인 충청학원 정관」 일부개정 승인안
제8호 안건. 법인수익사업회계 임의 특별적립금(재정여건개선목적) 적립 승인안

■ 임원 출결사항

참석임원	• 이사(6인): 설문식, 오경나, 김관수, 김홍배, 이동규, 권영국 • 감사(1인): 김정순
결석임원	• 이사(2인): 도성득, 윤건영 • 감사(1인): 정충량

임원현황

구 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8인	2인
재적임원	8인	2인
참석임원	6인	1인

■ 회의내용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국민의례 후 조영태 사무국장의 성원보고(재적이사 8인 중 6인의 이사, 감사 2인 중 1인의 감사 참석)에 이어 설문식 이사장(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보고사항】

사무국장이 전차 이사회 의결사항과 법인 업무보고를 하다.

전차회의 의결사항으로, ① 「교원 신규 임용 승인안」 이 의결되었음을 보고하고,

법인 업무보고로, ①소송 관련 보고 ② 소송 비용 확정결정 관련 보고, ③ 교무위원 임면 승인 보고 ④ 2021회계연도 결산 회계감사(내부 감사) 수감, ⑤ 2021학년도 법인회계 및 교비

오경나	이 동 규	설문식
	이동규	설문식

회계 외부회계감사 수감 ⑥ 2021회계연도 「세무확인업무」 수입계약 체결, ⑦ 2021회계연도 「세무조정 등 업무」 수입계약 체결, ⑧ 수익용부동산 매각대금 세무관련 보고, ⑨ 미래전략추진위원회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다.

【감사보고】

○ 의장 : 김정순 감사와 정충량 감사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리고 김정순 감사에게 감사보고를 하게 하다.

○ 김정순 감사 :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충청학원의 2021회계연도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 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 학교법인 충청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산 사항은 적절하여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충청학원의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감사결과를 보고하다.

○ 의장 : 보고사항과 관련 질문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안건심의】

□ 제1호 안건. **특임전임교원(강의중점교원)의 계약제 일반전임교원 전환 승인안**

○ 의장 : 제1호 안건으로 "특임전임교원(강의중점교원)의 계약제 일반전임교원 전환 승인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요구하다.

○ 사무국장 :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의 의결주문과 제안이유를 설명하다.

[의결주문] 특임전임교원(강의중점교원) 호텔조리파티쉐과 부교수 최●●, 사회복지과 부교수 조●●에 대하여 계약제 일반전임교원으로의 전환을 심의하여 승인한다.

[제안이유] 총장으로부터 교원 인사발령 제청이 교무팀 제7호(2022.3.25.) 문서로 접수되었으며, 이에 「정관」 제39조의2제2항 및 「교원인사관리규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호텔조리파티쉐과 부교수 최●●, 사회복지과 부교수 조●●[특임전임교원(강의중점교원)]에 대하여 계약제 일반전임교원으로의 전환을 심의하여 승인하려는 것임.

○ 김용희 교학처장: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다

○ 의장 : 제1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

○ 이동규 이사: 두 교수의 최초 임용기간이 다른 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다

○ 김용희 교학처장: 두 교수의 계약 기간에 차이가 있음을 답하다

○ 오경나 이사: 두 교수의 신분전환의 배경 및 취지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다.

○ 의장 : 제1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를 묻다.

오경나	이 동 규	설문식
오경나	이동규	설문식

○ 참석이사 전원 : 이사 정수 8인 중 참석이사 6인 모두 찬성의 의사를 표하다.
○ 의장 : 제1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2호 안건. 충청대학교 2023학년도 정원조정 승인안

○ 의장 : 제2호 안건으로 "충청대학교 2023학년도 정원조정 승인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요구하다.
○ 사무국장 : 충청대학교 2023학년도 정원조정 승인안의 의결주문과 제안이유를 설명하다.
[의결주문] 충청대학교 2023학년도 정원조정을 [별지2호]와 같이 승인한다.
[제안이유]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 심의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인원 133명 감원 (편제완성년도의 편제정원 339명 감원), 1개 학과 신설, 3개 학과 모집중지, 8개 모집단위 명칭변경, 1개 학제전환, 1개 학과전환 등을 별지와 같이 행하고자 승인을 요청하는 것임.
○ 이찬 기획처장 : 충청대학교 2023학년도 정원조정안을 보고하다.
○ 의장 : 제2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
○ 김관수 이사 : 한계학과와 관리학과의 기준과 간호학과의 교수충원율을 묻다
○ 이찬 기획처장 : 각각의 기준과 간호학과 교수충원율에 대해 설명하다
○ 오경나 이사 : 정원조정 배경에 대해 부연 설명하다
○ 의장 : 학과 경영 수지를 위한 입학 정원은 몇 명인지, 2024년 정원조정 기준에 대해 묻다
최소 모집인원에 대한 기준을 학과에 분명히 제시할 필요성을 말하다.
○ 이찬 기획처장 : 모집중지 기준인원에 대해 설명하다
○ 김홍배 이사, 김관수 이사: 정원조정 기준을 규정화 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말하다.
○ 권영국 이사: 정원조정 규정은 대학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묻다
○ 이찬 기획처장 : 규정에 대한 설명과,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 있음을 말하다.
○ 김홍배 이사 : 자율전공과 신설의 배경에 대한 질문을 하다
○ 이찬 기획처장 : 성인학습자와 외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를 설명하다
○ 의장 : 자율전공과 교수를 신규 채용하는지, 졸업장을
○ 이동규 이사: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잘 한 것이며, 학점에 대한 질문을 하다
○ 이찬 기획처장 : 자율전공학생들의 전공 수강 방법과 학점에 대하여 설명하다.
○ 의장 : 구조개혁위원회 회의록에서 유아교육과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다
○ 이찬 기획처장, 오경나 이사 : 유아교육과의 인증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다.
○ 의장 : 제2호 안건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다.
○ 참석이사 전원 : 이 안건에 모두 동의하다.
○ 의장 : 제2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를 묻다.

오경나	이 동 규	설문식
오경나	이동규	설문식

○ 참석이사 전원 : 이사정수 8인 중 참석이사 6인 모두 찬성을 표하다.
○ 의장 : 제2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3타

□ 제3호 안건. 충청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2022~2024) 승인안
○ 의장 : 제3호 안건으로 "충청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2022~2024) 승인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요구하다.
○ 사무국장 : 제 3호 안건의 의결주문과 제안이유를 설명하다.
[의결주문] 충청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개편(안)[별지 제3호]을 심의·의결한다.
[제안이유] 교육환경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대변화에 따른 충청대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 개편(안)을 부의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
○ 이찬 기획처장 : 중장기발전계획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 의장 : 제3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
○ 권영국 이사 :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목적과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하다
○ 이찬 기획처장 : 중장기발전계획의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의장 : 제3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를 묻다.
○ 참석이사 전원 : 이사 정수 8인 중 참석이사 6인 모두 찬성의 의사를 표하다.
○ 의장 : 제3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3타

□ 제4호 안건. 202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 의장 : 제4호 안건으로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요구하다.
○ 사무국장 :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의 의결주문과 제안이유를 설명하다.
[의결주문] 2021회계연도 충청대학교 교비회계 결산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와 같이 심의하여 확정한다.
[제안이유] 『충청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이사회에 제출된 『2021회계연도 충청대학교 교비회계 결산서』에 의한 결산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회가 심의하여 이를 확정하고자 함.
○ 김원규 경리팀장 :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서의 내용을 보고하다.
○ 김관수 이사 전원 : 외국인 대상 강사료와 등록금수입금액의 수지에 대하여 묻다
○ 김원규 경리팀장 : 수익이 발생되고 있음을 설명하다
○ 의장 : 제4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
○ 참석이사 전원 : 없다고 답하다.
○ 의장 : 제4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를 묻다.
○ 참석이사 전원 : 이사정수 8인 중 참석이사 6인 모두 찬성을 표하다.

오경나	이 동 규	설문식

○ 의장 : 제4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3타

□ 제5호 안건.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 승인안

○ 의장 : 제5호 안건으로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요구하다.

○ 사무국장 :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 승인안의 의결주문과 제안이유를 설명하다.

[의결주문] 2021회계연도 법인일반회계결산 및 2021회계연도 법인수익사업회계 결산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의1],[별지 제5호의2]와 같이 심의하여 확정한다.

[제안이유] 『2021회계연도 법인일반회계 결산서』 및 『2021회계연도 법인수익사업회계 결산서』에 의한 결산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회가 심의하여 이를 확정하고자 함.

○ 김원규 경리팀장 :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서의 내용을 보고하다.

○ 의장 : 제5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

○ 참석이사 전원 : 없다고 답하다.

○ 의장 : 제5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를 묻다.

○ 참석이사 전원 : 이사정수 8인 중 참석이사 6인 모두 찬성을 표하다.

○ 의장 : 제5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3타

□ 제6호 안건.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안

○ 의장 : 제6호 안건으로 "2022회계연도 법인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요구하다.

○ 사무국장 : 2022회계연도 법인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의 의결주문과 제안이유를 설명하다.

[의결주문] (1) 2022회계연도 법인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본 예산액 대비 자금수입·지출 총계 1,793천원 감액한 578,507천원으로 경정하고, (2) 2022회계연도 법인수익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본 예산액 대비 자금 수입·지출총계 243,470천원 증액한 29,542,438천원으로 경정하기 위하여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8조에 따라 [별지 제6호의1] 및 [별지 제6호의2]와 같이 심의하여 확정한다.

[제안이유]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8조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하여 이를 확정하고자 함.

○ 사무국장 :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고하다.

○ 의장 : 제6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

오경나	이 동 규	설문식

○ 참석이사 전원 : 이 안건에 모두 동의하다.
○ 의장 : 제6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를 묻다.
○ 참석이사 전원 : 이사정수 8인 중 참석이사 6인 모두 찬성을 표하다.
○ 의장 : 제6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3타

□ **제7호 안건. 「학교법인 충청학원 정관」 일부개정 승인안**

○ **의장** : 제7호 안건으로 「학교법인 충청학원 정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요구하다.

○ **사무국장** : 「학교법인 충청학원 정관」 일부개정안의 의결주문과 제안이유를 설명하다.

[의결주문] 「학교법인 충청학원 정관」 일부개정안을 [별지 제7호]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 사립학교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정관의 조문을 정비하고, 적립금 및 기금운용심의회 제도, 원격 이사회 제도를 신설하며, 이사회 소집 요건을 보완하려는 것임.

○ **사무국장** : 「학교법인 충청학원 정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하고, 상세내용이 별지 제7호에 수록되어 있음을 안내하다.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법령의 개정에 따른 해당 정관조문 정비.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2021. 4. 21., 2022. 2. 11., 2022. 3. 25.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개정은 2021. 6. 23., 2022. 1. 21., 2022. 3. 25.에 있었으며, 이에 변경된 개정 법령 조문의 내용과 우리 법인의 정관의 해당 조문을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나. 적립금 및 기금운용심의회 제도 신설(안 제3절).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라 향후 우리 법인이 적립금을 적립하게 되는 경우, 이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다. 개방이사의 자격 제한규정(결격사유) 도입(안 제18조의2 단서).

라. 원격 이사회 제도 도입(안 제28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18조제2항에 원격영상회의 제도 신설에 따라 우리 법인에도 도입하려는 것임.

마. 이사회 소집 요건 변경(안 제30조제2항, 안 제31조제2항). 원격영상회의에 이사 전원이 집합된 경우 그 전원이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따라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사회 소집권자가 질병, 장애, 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를 소집특례의 하나로 신설하려는 것임.

바. 이사회 소집공지 제도 도입(안 제31조의2). 「사립학교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이사회 소집공지를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사.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수와 대학평의원회 구성단위 변경(안 제56조, 안 제93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7제2항(2022. 3. 22. 신설)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수는 종전

오경나	이 동 규	설문식
오경나	이동규	설문식

7인에서 9인으로 변경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에 따라 대학평의원의 구성단위에 "조교"를 포함하려는 것임

○ **의장** : 제7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
○ **의장** : [**별지 7. 제7호 안건 별지] 학교법인 충청학원 정관 일부개정안** 중 제14조, 제15조, 16조, 제17조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참석이사 전원** : 수정안에 대하여 참석인원 모두 동의하다.
○ **의장** : 제7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를 묻다.
○ **참석이사 전원** : 이사정수 8인 중 참석이사 6인 모두 찬성을 표하다.
○ **의장** : 제7호 안건은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3타

□ **제8호 안건. 법인수익사업회계 임의 특별적립금(재정여건개선목적) 적립 승인안**
○ **의장** : 법인수익사업회계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기금으로 적립하는 안은 법적 검토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다. 3타

【간서명자 호선】
○ **의장** :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서명자를 호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순서에 따라 오경나, 이동규, 설문식이사를 추천하다.
○ **참석이사 전원** : 참석이사 전원이 이사장이 추천한 이사로 간서명자 호선에 동의하다.

【폐회선언】
○ **의장** : 제262회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2022년 4월 27일

오경나	이 동 규	설문식
오경나	이동규	설문식

참석임원 이사장 설 문 식 이 사 오 경 나

이 사 이 동 규 이 사 권 영 국

이 사 김 관 수 이 사 김 홍 배

감 사 김 정 순

[별지 1. 제1호 안건 별지]

강의중점교원의 계약제 일반전임교원으로 전환 심의 결과

구분	소속	성명	직급	최초임용일	임용기간	변동사항
계약제 일반전임교원	호텔조리 파티쉐과	부교수	최●●	2013.3.1	2022.9.1 ~ 2023.2.28	보수 및 계약기간
계약제 일반전임교원	사회복지과	부교수	조●●	2014.3.1	2022.9.1 ~ 2024.2.29	보수 및 계약기간

[별지 2. 제2호 안건 별지]

충청대학교 2023학년도 정원조정

	① 2022 기준					② 2023 정원조정(안)					③증감	
	계열	명칭	1. 입학 2. 정원	3. 학제	편제 정원	명칭	4. 입학 5. 정원	6. 학제	7. 편제 8. 정원		입학 정원	9. 편제 10. 정원
한계학과	인문	관광서비스과	30	3	90	모집중지					-30	-90
	인문	군사학과	32	2	64	모집중지					-32	-64
	공학	항공자동차모빌리티학부	60	3	180	항공자동차모빌리티과	50	3	150	전공폐지 후 학과전환	-10	-30
	인문	일본어통역과	30	2	60	모집중지					-30	-60
	공학	건축과	30	3	90		30	2	60	학제개편	0	-30
	공학	전기전자공학부 반도체전자공학과	40	2	80	반도체전자과	30	2	60	정원감원, 명칭변경	-10	-20
	공학	생명화공과	43	2	86	화학공학과	30	2	60	명칭변경, 정원감원	-13	-26
	공학	항공보안과	30	2	60		30	2	60		0	0
	공학	컴퓨터전지과	30	2	60		30	2	60		0	0
	인문	경영회계과	30	2	60		30	2	60		0	0
	인문	유아교육과	53	3	159		26	3	78	정원 감원	-27	-81
관리학과	자연과학	식의약품분석과	50	2	100		40	2	80	정원 감원	-10	-20
	공학	소방안전과	50	2	100		40	2	80	정원 감원	-10	-20
	인문	경찰행정과	48	3	144		40	3	120	정원 감원	-8	-24
	예체능	시각디지인과	40	2	80		30	2	60	정원 감원	-10	-20
	예체능	사회체육학부 스포츠재활과	32	2	64	스포츠재활과	32	2	64	명칭변경	0	0
	공학	전기전자공학부 전기과	54	2	108	전기과	45	2	90	정원감원, 명칭변경	-9	-18
	인문	호텔·바리스타과	30	2	60		30	2	60		0	0
	자연과학	간호학과	134	4	536		150	4	600	정원 증원	16	64

오경나	이 동 규	설문식
오경나	이동규	설문식

	지연과학	미용예술과	55	2	110		55	2	110		0	0
	지연과학	보건행정과	30	3	90		30	3	90		0	0
	지연과학	애완동물과	35	2	70	반려동물과	45	2	90	정원 증원.명칭변경	10	20
	자연과학	응급구조과	40	3	120		40	3	120		0	0
	자연과학	의료미용과	39	3	117		39	3	117		0	0
	자연과학	치위생과	84	3	252		84	3	252		0	0
	자연과학	호텔조리파티쉐과	60	2	120		60	2	120		0	0
	공학	도시건설정보과(야간)	30	2	60		30	2	60		0	0
	공학	인테리어디자인과	30	3	90		30	3	90		0	0
	공학	품질경영과(야간)	30	2	60		30	2	60		0	0
	인문	사회복지과	53	2	106		53	2	106		0	0
	예체능	방송영상콘텐츠과	30	2	60		30	2	60		0	0
	예체능	사회체육학부 생활체육과	35	2	70	생활체육과	35	2	70	명칭변경	0	0
	예체능	실용예술학부 실용댄스과	35	2	70	실용댄스과	35	2	70	명칭변경	0	0
	예체능	실용예술학부 실용음악과	35	2	70	실용음악과	35	2	70	명칭변경	0	0
신설						자율전공과	40	2	80	신설	40	80
합계			1,467		3,646		1,334		3,307		-133	-339

오경나	이 동 규	설문식
오경나	이동규	설문식

[별지 4. 제4호 안건 별지]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보고

1. 수입 총괄표

(단위 : 천원)

과 목	2021회계연도				2020 결산액(c)	전년도비교 [2021/2020] (b- c)
	예산액(a)	결산액(b)	예결산차액 (b-a)	결산액 구성비 (%)		
5100 등록금및수강료수입	20,421,155	20,331,824	△89,331	57.01	**22,646,787**	**△2,314,963**
5200 전입및기부수입	10,261,267	9,868,757	△392,510	27.67	**10,845,136**	**△976,379**
5300 교육부대수입	838,198	800,085	△38,113	2.24	**585,600**	**214,485**
5400 교육외수입	309,558	258,357	△51,201	0.72	**867,509**	**△609,152**
1200 투자와기타자산수입	3,362,872	3,284,762	△78,110	9.21	**1,251,003**	**2,033,759**
1300 고정자산매각수입	2,000	33,927	31,927	0.10	**27,820**	**6,107**
2100 유동부채입금	0	0	0	-	**0**	**0**
2200 고정부채입금	105,000	74,032	△30,968	0.21	**70,666**	**3,366**
3100 기본금	0	0	0	-	**0**	**0**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1,010,180	1,010,180	0	2.83	**1,254,879**	**△244,699**
자 금 수 입 총 계	36,310,230	35,661,924	△648,306	100.0	37,549,399	**△1,887,475**

2. 지출 총괄표

(단위 : 천원)

과 목	2021회계연도				2020 결산액(c)	전년도비교 [2021/2020] (b- c)
	예산액(a)	결산액(b)	예결산차액 (a-b)	결산액 구성비 (%)		
4100 보수	17,347,299	17,216,447	130,852	48.28	17,373,186	**△156,739**
4200 관리운영비	4,090,870	3,930,396	160,474	11.02	4,156,117	**△225,721**
4300 연구·학생경비	13,177,510	12,649,860	527,650	35.47	13,960,116	**△1,310,256**
4400 교육외비용	45,649	33,872	11,777	0.09	42,429	**△8,557**
4500 전출금	0	0	0	-	0	**0**
4600 예비비	20,000	0	20,000	-	0	**0**
1200 투자와기타자산지출	443,927	402,329	41,598	1.13	798,326	**△395,997**
1300 고정자산매입지출	473,081	470,261	2,820	1.32	157,702	**312,559**
2100 유동부채상환	0	0	0	-	0	**0**
2200 고정부채상환	105,000	43,370	61,630	0.12	51,344	**△7,974**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606,894	915,389	△308,495	2.57	1,010,180	**△94,791**
자 금 지 출 총 계	36,310,230	35,661,924	648,306	100.00	37,549,399	**△1,887,475**

오경나	이 동 규	설문식
오경나	이동규	설문식

[별지 5. 제5호의1 안건 별지]

2021 법인일반회계 결산서

(단위 : 천원)

자 금 수 입 현 황					자 금 지 출 현 황				
관 별	예산액(A)	결산액(B)	증감 (B-A)	결산액 구성비 (%)	관 별	예산액 (A)	결산액 (B)	증감 (A-B)	결산액 구성비 (%)
전입금 및 기부수입	475,833	460,000	△15,833	98.37	인건비(보수)	68,193	68,147	46	14.57
교육부대수입	0	0	0	-	관리운영비	97,239	82,763	14,476	17.70
교육외수입	40	18	△22	0.00	교육외비용	1,000	0	1,000	-
투자와기타자산	0	0	0	-	전출금	310,000	310,000	0	66.29
고정자산매각	0	0	0	-	예비비	2,940	0	2,940	-
유동부채입금	0	0	0	-	투자와기타자산지출	0	0	0	-
고정부채입금	0	0	0	-	고정자산매입지출	1,100	1,100	0	0.24
기본금	0	0	0	-	유동부채상환	0	0	0	-
					고정부채상환	0	0	0	-
미사용전기이월자금	7,599	7,599	0	1.63	미사용차기이월자금	3,000	5,607	△2,607	1.20
계	483,472	467,617	△15,855	100.0	계	483,472	467,617	15,855	100.0

[별지 5. 제5호의2 안건 별지]

2021 법인수익사업회계 결산서

(단위 : 천원)

자 금 수 입 현 황					자 금 지 출 현 황				
관 별	예산액 (A)	결산액 (B)	증감 (B-A)	결산액 구성비 (%)	관 별	예산액 (A)	결산액 (B)	증감 (A-B)	결산액 구성비 (%)
전입금및기부수입	0	0	0	-	인건비(보수)	0	0	0	-
교육부대수입	0	0	0	-	관리운영비	745,300	317,864	427,436	1.09
교육외수입	1,084,416	1,204,968	120,552	4.15	교육외비용	5,000	0	5,000	-
투자와기타자산	0	0	0	-	전출금	475,833	460,000	15,833	1.58
고정자산매각	0	24,500,000	24,500,000	84.33	예비비	20,000	0	20,000	-
유동부채입금	0	0	0	-	투자와기타자산지출	0	0	0	-
고정부채입금	0	0	0	-	고정자산매입지출	0	0	0	-
기본금	0	0	0	-	유동부채상환	0	0	0	-
					고정부채상환	0	0	0	-
미사용전기이월자금	3,347,408	3,347,408	0	11.52	미사용차기이월자금	3,185,691	28,274,512	△25,088,821	97.33
계	4,431,824	29,052,376	24,620,552	100.00	계	4,431,824	29,052,376	△24,620,552	100.00

오경나	이 동 규	설문식
오경나	이동규	설문식

[별지 6. 제6호의1 안건 별지]

2022회계연도 법인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관 별		예산		증감액	관 별		예산		증감액
		2022 제1회 추경예산	2022 본예산				2022 제1회 추경예산	2022 본예산	
자금수입	전입 및 기부수입	572,700	577,100	△4,400	자금지출	보 수	54,200	54,200	0
	교육 외 수입	200	200	0		관리 운영비	120,900	100,100	20,800
						교육 외비용	75,407	100,000	△24,593
						전출금	320,000	320,000	0
						예비비	3,000	3,000	0
	계	572,900	577,300	△4,400		계	573,507	577,300	△3,793
전기 이월자금		5,607	3,000	2,607	차기 이월자금		5,000	3,000	2,000
자금 수입 총계		578,507	580,300	△1,793	자금 지출 총계		578,507	580,300	△1,793

[별지 6. 제6호의2 안건 별지]

2022회계연도 법인수익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관 별		예산		증감액	관 별		예산		증감액
		2022 제1회 추경예산	2022 본 예산				2022 제1회 추경예산	2022 본 예산	
자금수입	교육 외 수입	714,806	1,113,267	△398,461	자금지출	관리 운영비	1,003,122	5,400,239	△4,398,117
	고정자산 매각수입	-	25,000,000	△25,000,000		교육 외 비용	1,098,213	5,000	1,093,213
	고정부채 입금	400,00	10	399,990		전출금	572,700	577,100	△4,400
						예비비	200,000	10,000	190,000
						고정자산 매입지출	25,505,000	20,000,000	5,505,000
						고정 부채상환	400,000	10	399,990
	계	1,114,806	26,113,277	△24,998,471		계	28,779,035	25,992,349	2,786,686
전기 이월자금		28,427,632	3,185,691	25,241,941	차기 이월자금		763,403	3,306,619	△2,543,216
자금수입 총계		29,542,438	29,298,968	243,470	자금지출 총계		29,542,438	29,298,968	243,470

오경나	이 동 규	설문식
오경나	이동규	설문식

[별지 7. 제7호 안건 별지]

학교법인 충청학원 정관 일부개정안

학교법인 충청학원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찬성에 의한"을 "찬성으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재산의 관리)"를 "(재산의 관리 및 보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법령이"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에"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을 "관할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재산목록 등의 비치)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수입·지출 계산서, 그 밖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를 작성하여 항상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인에"를 "법인의 업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구분하며,"를 "구분하며, 각 회계의"로, "기타 납부금 은"을 "그 밖의 납부금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 할"을 "회계로 전출(轉出)·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국가 ·"를 "국가,"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예산·결산자문위원회"를 "적립금 및 기금운용심의회"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적립금) ①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改修)·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오경나	이 동 규	설문식
오경나	이동규	설문식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한다.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다.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이하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삭제한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이사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적립하는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제15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제15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충청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 각 2명씩
2.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 2명
3. 동문 또는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 2명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이 법인의 이사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1항제2호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 또는 위험관리·평가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오경나	이 동 규	설문식
오경나	이동규	설문식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의 임기 등) ①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자율규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제18조의2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이 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제19조제1항제1호 중 "중임 할"을 "중임(重任)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임원"을 "이사나 감사"로, "생긴"을 "생겼을"로, "이를 보충"을 "보충"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이 법인은 개방이사"를 "개방이사"로, "15일 이내"를 "15일"로,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전 3개월)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이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할 때에"로, "추천하여야"를 "추천을 완료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없을 시"를 "없는 때"로, "요청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경나	이 동 규	설문식
오경나	이동규	설문식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제18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대상인원의 2배수 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

⑤ 이 법인은 개방이사를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 중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를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서로"로,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를 "따른 친족관계인 이사들이"로, "초과하여서"를 "초과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상 있는 자라야"를 "이상인 사람이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자라야"를 "사람이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이어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제21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을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으로, "경과한자"를 "지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경과한자"를 "지난 사람"으로 한다.

2.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라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1조의3 본문 중 "학교법인의 임원"을 "임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 결정하며"를 "심의·결정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

오경나	이 동 규	설문식
오경나	이동규	설문식

제24조제1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을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호선한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한다"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재산상황"을 "재산 상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때에는 이사회의"를 "경우에 이사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재산상황과 회계"를 "재산 상황"으로 한다.

3.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하거나 불비(不備)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제2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당해 학교법인"을 "법인"으로, "교원 기타"를 "교원이나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사장은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법인의 직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3장제1절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임원의 보수 제한) 상근이사(常勤理事)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이사로서"를 "이사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결정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예산, 결산, 차입금"을 "예산·결산·차입금"으로, "취득, 처분"을 "취득·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임면"을 "임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제1항 중 "이사회는 이사장"을 "이사장"으로, "이사가"를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
2. 제28조제3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에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따른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

오경나	이 동 규	설문식
오경나	이동규	설문식

제31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을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
3. 이사회 소집권자가 질병, 장애, 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

제3장제2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이사회의 소집공지)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는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

제36조의 제목 "(해산)"을 "(해산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목적 달성의 불가능
2.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3. 파산
4.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 또는 제1항제2호의 사유로 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중 "잔여 재산"을 "잔여재산"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원하는 경우에는"을 "원하면 그 교원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로, "의사에 불구하고"를 "의사와 관계없이"로, "제7호"를 "제7호 및 제7호의2"로, "원하는 경우"를 "원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징집 또는 소집된 때"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그 밖에 법률에 따른"으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으로, "연수하게 된 때"를 "연수를 하게 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고용될 때"를 "고용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오경나	이 동 규	설문식
오경나	이동규	설문식

및 제8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을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으로, "부모의 간호를"을 "부모를 간호하기"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국외근무"를 "국외 근무"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제43조제4항 중 "제4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0조제7호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으로, "동호의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를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직위해제 및 해임)"을 "(직위의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제44조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용권자는"을 "교원이"로, "교원에 대하여"를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직무수행 능력"을 "직무수행능력"으로, "극히 불량한 자 또는"을 "매우 불량하거나"로, "심히 불성실한 자"를 "매우 불성실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사람으"를 "경우"로, "자"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소멸된 때에는"을 "소멸되면"으로 한다.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제3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직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및 제6항(종전의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는 경

오경나	이 동 규	설문식
오경나	이동규	설문식

우에는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의3 본문 중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를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형법」 제355조"를 "같은 법 제355조"로, "해당하고"를 "해당하며"로 한다.

제4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이를"을 "그 교원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극히 불량한"을 "매우 불량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정부를 파괴함을"을 "정부 파괴를"로, "방조한"을 "방조(幇助)하였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또는 어느"를 "어느"로, "지도·선동한"을 "지도·선동하였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을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임용된"을 "임용되었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유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른 사유로"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7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인"을 "2명"으로 한다.

제80조제3항 본문 중 "있어야한다"를 "있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행 할"을 "시행할"로 한다.

제9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평의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평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1. 교원 4명
2. 직원 3명
3. 조교 1명
4. 학생 1명
5. 동문 1명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

제9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장이 지명한 의원이 이를 대리한다"를 "부의장이 이를 대행한다"로 한다.

① 평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평의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단서 중 "제93조제1항제3호"를 "제9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로 하고, 같은

오경나	이 동 규	설문식
오경나	이동규	설문식

조 제2항 중 "보궐"을 "평의원의 결원에 따라 보임된"으로, "잔임기간"을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제96조제6호 중 "위원 추천"을 "위원의 추천"으로 한다.

부 칙<제262회 이사회, 2022. 4.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 4. 2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56조제2항의 징계위원회 위원 수에 관한 규정과 제93조제2항의 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오경나	이 동 규	설문식
오경나	이동규	설문식